



## 5인 미만 초소규모 사업장에도 산업보건의 관심이 필요하다

여성, 고령,  
비정규직 근로자가  
특히 집중되어 있는  
취약집단 중의 취약집단이 있다.  
다름 아닌 5인 미만  
초소규모 사업장이다.

흔히 산업보건 분야에서 취약집단이라고 하면 여성 근로자, 고령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를 떠올린다. 그리고 규모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취약집단이라 말한다. 그런데 여성, 고령, 비정규직 근로자가 특히 집중된 취약집단 중의 취약집단이 있다. 다름 아닌 5인 미만 초소규모 사업장이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수는 2016년 12월 현재 2,409,318개소로 전체 사업장의 98.1%를 점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 수는 10,674,823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57.9%를 점한다. 5인 미만 초소규모 사업장 수는 1,763,477개소로 전체 사업장의 71.8%, 50인 미만



대구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학과 교수  
**박정선**

사업장의 73.2%를 차지하며,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수는 2,736,477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4.8%, 50인 미만 근로자의 25.6%를 차지하고 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이다. 그럼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산업보건학적 취약성을 보인다. 그 하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속하고 있는 근로자의 취약한 특성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이들 사업장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호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2015년 8월에 시행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의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 평균보다 여성 근로자(56.5% 대 43.7%), 고령 근로자(55세 이상: 28.2% 대 19.0%)가 많고, 근로자의 교육수준(중졸 이하: 22.9% 대 13.1%)이 낮은 경향이다. 또한 비정규직(72.5% 대 34.4%)이 많고, 한 직장의 근무 기간이 매우 짧은 편(6개월 미만: 34.3% 대 18.7%)이며, 도·소 매업(23.9%)에 많이 분포하고, 단순노무직(25.8%)이 많으며, 월평균 급여수준은 140만 원 정도로 전체 사업장 근로자 평균인 230만 원에 비하여 작았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산업보건학적 취약성은 산업재해통계를 통해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2015년 산업재해통계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만인 당 사고사망률은 1.16으로 전체 사업장의 0.53에 비해 두 배가 넘는다.

초소규모 사업장의 산업보건학적 취약성은 우리나라보다 앞서가는 유럽국가들이라고 해서 다를 바는 없다. 유럽산업안전보건청(EUOSHA)의 통계에 따르면, 10인 미만 사업장(micro-enterprise)이 유럽 사업장의 92.4%를 차지하며, 이들 사업장에 분포하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67.4%라고 한다. 따라서 10인 미만 초소규모 사업장은 유럽 경제에서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ESENER 조사에 따르면, 사업장이 소규모일수록 산업안전보건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럽산업안전보건청은 이러한 어려움이, 작업과 고용의 특성, 사업장의 경제적 위치 및

한국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산업보건학적으로  
취약하게 만드는 또 다른 측면이  
하나 더 있다. 다름 아닌  
법적 보호가 안 된다는 점이다.

사업 관계, 사업의 다양성과 유연성, 근로 감독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움, 사업주 및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자세와 능력, (창업에서 폐업까지의) 짧은 수명 등으로부터 기인한다고 했다.

그런데 한국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산업보건학적으로 취약하게 만드는 또 다른 측면이 하나 더 있다. 다름 아닌 법적 보호가 안 된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대부분의 법적 규정에서 제외되며, 산업안전보건법 상으로도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제2장(안전보건관리체계)과 제3장(안전보건관리규정)이 적용 제외되고 있다.



2016년에 신설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제도도 2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게 되어 있어 5인 미만 사업장엔 소용이 없다. 2016년 초 산업보건계를 부끄럽게 만들었던 급성 메탄올중독도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파견근로자를 쓰다가 발생한 사고로,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의 존재와 무관하지 않다.

독일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별개로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직업환경 전문의와 안전보건전문가(occupational physicians and OSH professionals)’에 대해 규정하는 법이 있다. 2012년부터 독일은



사업장 근로자수	지도형태
10인 이상	표준적 지도 감독
10인 이하 (대안적 지도 감독)	기본 지도 감독 임시 지도 감독

10인 이하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이 법을 매우 혁신적으로 바꾸었다(DGUV regulation 2). 즉, 직업환경 전문의와 안전보건전문가의 표준적 지도 감독(the standard supervision)을 적용하는 10인 초과 사업장과는 달리, 10인 이하 사업장에는 사업장 수요(필요)를 바탕으로 대안적 지도 감독(an alternative, demand-based supervision)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대안적 지도 감독은 기본 지도 감독(basic supervision)과 임시 지도 감독(ad hoc supervision)으로 이루어지는데, 기본 지도 감독은 외부 직업환경 전문의 및 안전보건전문가의 도움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기록하는 것이며, 임시 지도 감독은 사업주가 특별히 안전보건문제를 다루고자 할 때 직업환경 전문의와 안전보건전문가 외에 해당 업종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지도 감독을 받는 것을 말한다. 업종과 규모에 따라 사업장 안전보건 지도 감독방식을 매우 정교하게 차별화시킴으로써 초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도 따를 수 있도록 현실화한 독일의 산업재해예방규정(DGUV regulation 2)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